

제403회 정례회
'22. 9.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안지훈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사유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3조)
- 지원 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원가족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립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 청년들과 비교해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혼자인 상태에 놓임으로 발생하는 불안·우울로 자살을 생각하는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36.1% (일반청년 2.5%)
 - (주거) 고시원, 친구/지인 집, 등 취약주거 거주율 16.7%
 - (취업) 실업률 16.3% (일반청년 8.9%)
 - (자살 생각) 자살을 생각한 비율 50.0% (일반청년 16.3%)
-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2500여명, 충북은 119명('21)이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음. 이들은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채 자립을 시작하고 있음.
 - ※ 충북의 최근 3년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현황: 145명('19), 123명('20), 119명('21)
- 정부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및 주거, 경제, 건강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임.
- 또한, 충청북도 가정위탁센터 및 충청북도경찰청에서의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고, 현재 14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¹⁾에 있음.

- 이에 충청도 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한 것임.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16조의3에서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지금까지는 “보호종료아동(퇴소아동)”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는 1)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며, 2)해당 용어 자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 3)연령 상 19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청년²⁾)이라는 점, 그리고 4) “보호”라는 수동적 용어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능동적 용어인 “자립”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용어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 7. 13.)’에서 “자립지원 청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법 제39조에서는 퇴소 시부터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을 위

1) 조례 미제정 시도(3곳): 인천, 충북, 전북

2)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음.

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여 15세 이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을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용어를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사용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 “보호종료아동(퇴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을, “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대신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규정으로,
 -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포괄적 내용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밖에 본 조례안에서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기존 위원회 조례”라 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기존 위원회 조례를 따르게 되는 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안 제14조는 보칙 규정으로,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기존 정부의 자립지원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아동 까지 확대해 좀 더 일찍 자립지원 정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자립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유관기관 간담회 및 조례안 예고,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참고 1

충청북도 최근 3년간 보호종료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설종류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계	387	145	123	119	
청주	계	203	76	66	61	
	아동양육시설	66	23	21	22	
	공동생활가정	47	17	14	16	
	가정위탁	90	36	31	23	
충주	계	31	12	11	8	
	아동양육시설	8	4	3	1	
	공동생활가정	2	1	1	0	
	가정위탁	21	7	7	7	
제천	계	14	4	6	4	
	아동양육시설	7	2	2	3	
	공동생활가정	1	0	1	0	
	가정위탁	6	2	3	1	
보은	계	6	2	4	4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6	2	4	4	
옥천	계	17	11	2	4	
	아동양육시설	6	4	0	2	
	공동생활가정	2	1	1	0	
	가정위탁	9	6	1	2	
영동	계	15	4	4	7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15	4	4	7	
증평	계	5	1	3	1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5	1	3	1	

구분	시설종류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계					
진천	계	18	6	5	7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18	6	5	7	
괴산	계	3	1	1	1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3	1	1	1	
음성	계	60	26	18	16	
	아동양육시설	46	21	14	11	
	공동생활가정	0	0	0	0	
	가정위탁	14	5	4	5	
단양	계	11	2	3	6	
	아동양육시설	0	0	0	0	
	공동생활가정	6	2	1	3	
	가정위탁	5	0	2	3	

참고 2

충청북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아동복지시설 현황

※ 시군비 100%, 시군이양사업

(‘21. 12월 기준, 단위: 명)

시설 종별	시설명칭	시군	설치일	종사자수	입소아동		법인명칭
					정원	현원	
계	10개소			337	618	458	
아 동 양 육 시 설	충북육아원	청주	46.02.15	34	54	46	충북사회봉사회
	늘푸른아동원	청주	52.03.10	29	63	38	현진복지재단
	혜능보육원	청주	52.07.01	48	73	63	충북혜능보육원
	현양원	청주	65.03.15	36	54	47	충북현양복지재단
	진여원	충주	06.08.08	24	48	33	성불복지회
	제천영육아원	제천	63.02.13	33	49	34	화이트아동복지회
	영실애육원	옥천	52.03.27	28	75	39	영실애육원
	음성향애원	음성	52.07.01	25	72	38	음성향애원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음성	04.12.07	36	80	70	예수의꽃동네 유지재단
	꽃동네 천사의집	음성	11.05.30	44	50	50	

※ 미지원시설 현황

(‘21. 12월 기준, 단위: 명)

시설 종별	시설명칭	시군	설치일	종사자	아동		법인명칭
					정원	현원	
계	1개소			-	9	-	
양육 시설	라파의집 (휴지)	충주	04.12.31.	-	9	-	개인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1. 12월 기준, 단위: 명, 천원)

시군	시설명	설치일	아동		종사자	비고
			정원	현원		
계	22개소		152	109	73	
청주(13)	참 좋은 집	05.10.17	7	5	3	개인
	해 뜨는 집	05.12.14	7	4	4	개인
	청주투모루	06.08.08	7	5	3	개인
	와이즈	06.08.18	7	4	2	개인
	남비전하우즈	06.10.19	7	5	3	개인
	민들레	07.10.18	7	6	3	개인
	모퉁이돌	08.04.01	7	5	3	개인
	꿈이 있는 집	09.05.28	7	7	4	개인
	드림하우스	09.09.30	7	5	3	개인
	해오름 집	09.06.29	7	7	4	개인
	예찬하우스	16.07.26	7	6	4	개인
	서원경	16.11.01	7	4	4	개인
희망나무	16.11.01	7	7	3	개인	
충주(2)	자혜원	09.12.17	7	4	4	개인
	사라의 집	13.05.09	5	3	3	개인
제천(2)	옹달샘	11.04.12	7	6	3	개인
	초록별	17.07.26	7	6	4	개인
영동(1)	모해그룹홈	21.05.01	7	4	3	개인
단양(4)	작은보금리	05.11.17	7	6	3	개인
	한가죽족홈	10.06.30	7	5	3	개인
	나우그룹홈	18.10.30	7	3	4	개인
	하우시리리집	17.11.28	7	2	3	개인

※ 장애아동, ADHD아동 등 입소시설에 추가인건비(1명) 지원 : 8개소(청주 5, 충주 1, 제천 1, 단양 1)

<미지원시설 현황>

(’21. 12월 기준, 단위: 명, 천원)

시군	시설명	설치일	아동		종사자	비고
			정원	현원		
계	2개소		14	5	4	
충주(1)	여름	’20.06.29	7	2	2	개인
제천(1)	바라봄	21.06.24.	7	3	2	법인

※ 그룹홈 지원기준 : 최소 12개월이상 실질적 운영시설이고, 그룹홈 평가(복지부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참고 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주요내용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1.7.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 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 (보호권) ▲ 보호기간 연장(現 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 (자립동반자) ▲ 전담기관 확대(8개 → 17개 시도) ▲ 전담인력 확충(120명)
- ◆ (자립버팀목) ▲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 (자립역량) ▲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 (심리지원) ▲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 (제도기반) ▲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 법령 정비
▲ 멘토링 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1

비전과 추진과제

비전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기본 방향

- ✓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6대 주요 추진 과제

- ①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②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③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④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⑤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⑥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추진과제		현행	개선안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 연장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a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4세+a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미성년후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개선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달 체계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안전망	자립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아동 자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매칭비율 1:1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매칭비율 1:2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자립 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최소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상향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주거 안전망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시도, 377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주택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룸형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진로 · 진학	진로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기초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고용 · 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청년도전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직업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자립 역량	자립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프로그램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경제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공공·민간 제도 관련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 정서	상담·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자원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사회적 지지체계	바람개비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멘토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신체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법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보호종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에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온라인 발급 추진
보호종료아동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민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